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호 9379

제안연월일: 2025. 3.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2건의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건 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전체회의 상정
의료급여법	2203742	윤준병	2024.9.6.	2024.11.14.
일부개정법률안	2205596	강선우	2024.11.14.	소위 직회부

- 나.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3.)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다.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2024. 12. 5.)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적발되면 향후 청구되는 의료급여비용에 지급보류 처분을 하여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 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의 해당 조항은 지급보류처분의 취소에 대하여 입법적 규율이 전혀 없는 점, 처분 이후 무죄판결 확정 등으로 의료급여기관이 혐의를 벗어나더라도 지급보류기간 동안 발생한 재산권 제한상황에 대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에 대한 규율이 없는 점 등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위헌성을 가지고 있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이에 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에 대한 취소 제도 및 취소 이후 보류된 급여비용 지급 시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 적용을 규정함으로써,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의5).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급보류 처분 후 법원 하급심의 무죄 판결 및 법원 무죄 확정 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처분에 대한 법 조항을 신설하고, 취소 이후 보류된 급여비용 지급 시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 적용을 규정함(안 제11조의5).

법률 제 호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은 지급 보류된"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지급 보류 처분을 취소하고, 지급 보류 된"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지급 절차와 이자의 산정 등에"를 "지급 절차 등에"로 한다.

- 이 경우 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의 효력은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그 처분 이후 청구하는 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미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에 대하여 법원에서 무 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선고 이후 실시한 의료급여에 한정하여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하는 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 후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 니할 수 있다.
- 이 경우 이자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

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죄 판결 선고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이 법 시행일까지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아 혀 행 제11조의5(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제11조의5(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① 제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 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후단 신설> ----. 이 경우 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의 효력은 해당 의료 급여기관이 그 처분 이후 청구 하는 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미 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 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에 대하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선고 이후 실시한 의 료급여에 한정하여 해당 의료 ③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급 보류된 급여비용에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 보류 절차 및 의견제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에 따른 지급 보류된 급여비용 및 이자의 지급 절차와 이자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급여기관이 청구하는 급여비용
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
후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u>4</u>
시장·군수·구청장
은 지급 보류 처분을 취소하고,
지급 보류된
이자는 「민법」 제379조에 따

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
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
<u>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u> 한다.
<u>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u> 한다.
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 한다. ⑤
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 한다. ⑤
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 한다. ⑤